#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93

발의연월일: 2021. 3. 24.

발 의 자:하태경・황보승희・권명호

서범수 · 김예지 · 김용판

신원식 · 송석준 · 이철규

백종헌 · 하영제 · 최승재

임종성 · 서일준 · 한무경

김승수 • 이상헌 • 양금희

김주영 의원(1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 피해의 예방 및 구제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 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 임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업계의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이용자의 알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

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이용자불만 사항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용자불만처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3(게임물이용자위원회) ① 매출액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운영

- 하는 자(이하 "게임제작업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게임제작업자등은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③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 및 확률정보 관련 조사 또는 시정요구
  - 2. 게임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권리구제 관련 업무
  - 3. 이용자의 게임접근성 향상 관련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 ②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 ③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게임제작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익보호위원회에 이용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의5(게임제작업자등의 의무) ① 게임제작업자등은 제18조의4제1 항제1호에 따른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조사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②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 하여야 한다.
- ③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권익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보호 위원회는 게임제작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에 반하여 법인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권익보호 활동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부당한 압력 행위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권익보호 활동에 부 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4 및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 1의3. 제18조의5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 청을 거부·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제4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1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을 방해한 자
- 제48조제1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권익보호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물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
	<u>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u>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
	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
	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을 말한다.
<u>&lt;신 설&gt;</u>	제18조의2(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
	위원회) 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
	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이용자불만사항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소속으로 게임물이용자권익
	보호위원회(이하 "권익보호위

<신 설>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용자불만처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게임물이용자위원회)

① 매출액 등이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 임배급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게임제작업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 어야 한다.

- ② 게임제작업자등은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의 전문성과 경 험을 갖춘 자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위 원을 위촉한다.
- ③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4(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게임물이용자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신 설>

과 같다.

- 1.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

   및 확률정보 관련 조사 또는

   시정요구
- 2. 게임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의 권리구제 관련 업무
- 3. 이용자의 게임접근성 향상
   관련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
   에 관한 업무
- ②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제1 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게임 제작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부당 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익 보호위원회에 이용자불만처리 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의5(게임제작업자등의 의무) ① 게임제작업자등은 제18 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게임 물이용자위원회의 조사요구 또

<신 설>

- 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 용하여야 한다.
- ②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 용자위원회가 제18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 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 다.
- ③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 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권익보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보호위원회는 게임제 작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 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 용자위원회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에 반하여 법인 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1의2. • 1의3. (생략)

2. ~ 10. (생략)

1.	권약	l 보	호	활동	을	이유	로	한
	신분	상	불여	이익,	근	무조	건싱	-의
						압력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권익보호 활 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행위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 지 아니한 자
- 1의3. 제18조의5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거부·회피하거나 거짓으 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청을 거부・회 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 1의4. 1의5.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 2. ~ 10.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

1.·1의2. (생략) <신설>

 1의3.
 (생 략)

 2.
 ~ 8.
 (생 략)

 ② (생 략)

제46조(벌칙)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을 방해한 자
제48조(과태료) ①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
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심
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
항을 권익보호위원회에 보고
하지 아니한 자
<u>1의4.</u>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